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8가합534445 판결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유정석, 김상만

피 고 1.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황예영, 권영균

2.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조수경

변론 종결 2019. 9. 27.

판결 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 한다)는 2006.부터 2007.경 사이에 2곳의 외국 선박발주자들1)(이하 '이 사건 선박발주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총 8척의 선박에 관한 8건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선박발주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B가 이 사건 각 건조계약에 기하여 선박발주자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선수금 환급의무를 보증해 주는 내용의 8건의 선수금 환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피고 무역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보증서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받는 내용의 8건의 수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가 신규수주 감소와 선박건조비용 상승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B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하 '피고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주관 하에 2009. 12.경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에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회는 2009. 12. 24. 제1차 협의회 결의를 통해 B에 대하여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를 의결하였으며, 2010. 1. 15. 제2차 협의회 및 2010. 4. 13. 제4차 협의회에서는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될 경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기준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절차 개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간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아닌 보증제공인인 피고 공사의 주채권에 산입되었고, 채권비율에 따른 의결권도 위 피고가 행사하였다.

라. B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4. 30.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이행 약정에 따라 B는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를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선박발주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7.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총277,034,537,569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원고의 수출보증보험계약 특별약정 위반을 이유로 147,167,732,98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이하 '지급거절 보험금'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7. 피고 공사를 상대로 지급거절 보험금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이하 '선행 보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9.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위 청구금액 중 13,145,365,903원 인용)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7031).

바. 원고가 2012. 11. 23. 이 사건 관리절차의 제15차 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안건이 가결되자, 원고는 2012. 11. 29.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2)에 따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이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라 한다)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013. 6. 17. 채권매매대금으로 8,453백만 원(= 손익정산금 2,438백만 원 + 채권매매대금 6,015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위 부동의 당시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도 이 사건 구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채권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서면에서 위 구상채권을 대상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사. 선행 보험금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3. 6. 13. 원고가 선박발주자들에게 선수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특별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위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 81106), 2014. 11. 13. 같은 취지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2080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1. 29.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서면에 기재한 대상채권에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선행 보험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상채권 중 피고 공사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보험금 부분이 원고의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손익정산금과 채권매매대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관리절차상 피고 공사의 채권으로 분류되었던 위 구상채권액 146,167,732,980원이 위 확정판결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 에는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의 추가에 따라 재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8,509,000,000원의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매매대금 20,9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상계하면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의 채권매매대금 재산정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한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선행 보험금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건 협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정산 비율 조정은 불필요하며,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액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산업은행의 2013. 5. 2.자 회신내용(갑 제13호증의 2)을 전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대금재산정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반대증거로 보일 뿐이다), 갑 제19호증의 1, 2 각 기재는 피고 산업은행이 F, 기술보증기금, G, H, I 및 피고 공사에게 송부한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도채권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절차상의 손익정산³⁾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매매대금 재산정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로 당시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던 기존 채권뿐만 아니라, 선행 보험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 공사가 면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위 기초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이른바 '형성권'의 의의와 성격, 구 기촉법 제20조의 규정 내용 및 문언의 의미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른바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변경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형성권의 행사에 따른 효과의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반대채권자는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 당시 매수청구서면에 이 사건 구상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보험금 부분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을 위 채권매수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관한 이의를 유보하지도 않았다.

③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가 언제 매수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찬성채권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구 기촉법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그 대상채권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구상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그 귀속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법률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④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취지(워크아웃 절차의 안정적 운영 및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로 볼 때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반대채권자가 반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되었던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공동관리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채권이 피고 공사의 주채권으로 간주되어 피고 공사에 게 의결권이 부여되는 등 그 참여가 보장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덕기, 판사 최지현

1) 사우디아라비아의 D 및 네덜란드의 E

2)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3) 여기서 말하는 손익정산은 구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결과 등으로 발생한 채권액의 변동을 협의 회 내의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정된 손익정산비율에 맞게 재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 사이의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